

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

의 안 변 호	5-149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 . 9 . .

제 출 자 : 동 두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우리 시 조직개편으로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 관련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로 변경됨에 따라 기금운용관 지정을 현실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출납 회계관직 변경(안 제11조제1항제1호)

- 기금운용관을 “사회복지과장”에서 “보건소장”으로 함.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1호 중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보건소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과		보건소
입 안 자	실 · 과장 직위 · 성명	보건소장 김 제 팔
	담당 · 팀장 직위 · 성명	위생담당 이 승 찬
	담 당 자 성명 · 전화	이 병 한 860 - 2231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회계공무원)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 1. 기금운용관 : <u>사회복지과장</u> 2. (생략) ② (생략)	제11조(회계공무원) ① ----- ----- --- ----- 1. 기금운용관 : <u>보건소장</u> 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